#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버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나.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8조, 제12조, 제13조)

**4. 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가.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나.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을 발굴·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 조례는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조례제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위원회 운영과 예비적사회기업 등의 대상업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 행정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4. 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가. 창고형 SSM이 난립함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죽이고 지역상권을 쇠퇴하게 한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법령을 검토한바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라. 합목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영으로 유통과정에서 우위를 점한 대형유통기업이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물건을 편리하게 제공할 경우 1킬로미터 범위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지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하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마. 주차시설의 완비, 합리적인 상품관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통구조개선 등 상가시설 현대화와 진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자정노력이 함께 할 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